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김경환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 번호	141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11. 13.

발 의 자 : 김경환, 김영길, 천병태
이효상, 김순점, 권태호, 강혜순
이복희, 오세라, 서경환

1. 개정이유

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추가
(안제2조제3호)

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(안제2조)

3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(행정사무조사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~제116조, 제117조(하부행정기관의 장)

4. 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 : 해당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사 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7. 11. 13. ~ 11. 19. ()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중구의회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조기관중”을 “보조기관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

제2조제4호 중 “소속직원중”을 “소속직원 중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범위) 울산광역시 <u>중구의회</u>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구청장의 <u>보조기관중</u> 국장, 실·과장급 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<u>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</u> 4.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<u>소속직원중</u> 구청의 실·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<u>자</u> 	<p>제2조(범위) ----- <u>중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<u>각호</u>----- 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보조기관 중</u> ----- 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<u>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</u> 4. ----- ----- <u>소속직원 중</u> ----- ----- <u>사람</u>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 행정안전부(자치제도과), 02-2100-3814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7조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면·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구청장
2.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, 실·과장급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
4.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·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

